



제319회 남양주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복지환경위원회

**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[박윤옥 의원 대표발의]
검 토 보 고 서**

2026. 4. 17.

복 지 환 경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조 공 선

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박윤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기후변화 및 도시환경 변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, 물순환 촉진 시책 및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쾌적한 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기본개념 정비 규정(안 제1조~제4조)
- 나. 물관리 및 물순환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부문별 실천 계획 수립 등 규정(안 제5조~제7조)
- 다.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 구성,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 규정(안 제8조~제11조)
- 라. 물순환 촉진 시책 추진 규정(안 제12조~제16조)
- 마.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및 보조금 지원규정(안 제17조~제1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

다. 관련부서 : 환경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4. 7. ~ 2026. 4. 13. (6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기후변화 심화 및 도시화 등 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「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상위법령인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물환경보전법」의 취지를 반영하고,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물관리 및 물순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부문별 실천계획 및 평가체계를 명문화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. 또한,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 및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, 저영향개발기법 적용, 비점오염 저감 및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등은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안은 물관리 및 물순환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☑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물순환촉진법)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물순환”이란 「물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.
2. “물순환 촉진”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
 - 나. 수생태계의 보전·관리와 수질개선
 - 다. 가뭄·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
 - 라. 강수의 침투·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
 - 마. 하수 재이용,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
3. “물순환 시설”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
 - 나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
 - 다. 「수도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
 - 라.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
 - 마. 「지하수법」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
 - 바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
 - 사.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
 - 아.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4. “물순환 촉진구역”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·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.
5. “물순환 촉진사업”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·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6조(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
2.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·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1.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
2.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·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
3.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
4.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·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
5.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·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

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·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리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☐ 「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1조(물순환 촉진구역 지정·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·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·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
2.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·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
3.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
4. 그 밖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·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·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·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·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☑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7조(오염원인자 책임원칙)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·훼손을 방지하고 오염·훼손된 환경을 회복·복원할 책임을 지며,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-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(안)

나. 재정 수반 요인

- 제18조(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, 민간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18조는 재정 수반에 관한 요인인 구체적 사업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김정태